

 신안산대학교	성과관리센터 운영규정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padding: 2px;">규정번호</td><td style="padding: 2px;">3-1-24</td></tr> <tr> <td style="padding: 2px;">제정일자</td><td style="padding: 2px;">2024. 3. 20</td></tr> <tr> <td style="padding: 2px;">개정일자</td><td></td></tr> <tr> <td style="padding: 2px;">책임부서/팀·계</td><td style="padding: 2px;">기획처</td></tr> </table>	규정번호	3-1-24	제정일자	2024. 3. 20	개정일자		책임부서/팀·계	기획처
규정번호	3-1-24									
제정일자	2024. 3. 20									
개정일자										
책임부서/팀·계	기획처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신안산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전반의 운영성과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목적의 성과분석과 환류를 위해 설치한 성과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 구성 및 운영, 그 밖의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과분석과 환류관리는 대학자체평가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자체평가에 기초한다.

제2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학 성과관리 기본계획 수립
2. 대학 성과관리를 위한 성과지표 개발
3. 대학 성과지표 데이터의 수집·분석
4. 대학 성과관리 결과의 공유
5. 대학 사업운영 현황 관리
6. 대학발전계획 성과 평가 및 대학 자체평가 업무
7. 기타 대학운영의 성과로 판단할 수 있는 업무

제3조(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성과관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둔다.

②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 성과관리센터의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③ 센터에는 업무관리를 위하여 직원을 두며, 필요한 경우 연구원을 둘 수 있다.

제4조(성과관리) ① 센터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성과관리 및 환류체계 구축을 위해 매년 성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② 센터는 상시 성과관리를 추진하며 각 학과 및 부서는 이에 필요한 자료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대학발전계획 성과 평가와 대학 자체평가 등을 분석하여 대학의 성과관리 결과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 후 구성원과 공유한다.

제5조(위원회) ① 대학 성과관리 전반의 사항과 센터 운영의 주요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성과관리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총장이 위촉하는 7명 이내의 전임교원과 직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성과관리 기본계획 수립
2. 대학성과지표의 개발, 관리 및 평가
3. 대학자체평가 보고서 작성
4. 센터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6. 기타 대학성과와 관련된 사항

제7조(재정 및 회계) ① 센터는 매해 사업예산을 수립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재정은 교비, 국고, 기타비용으로 충당한다.

② 센터의 회계연도는 대학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8조(평가 및 환류) 센터는 매해 제4조(성과관리)를 시행하며 그 평가결과를 환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